

# 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

2025.7.1.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생자치 대표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표 구성)** 학급자치대표(4~6학년별 학급회장 1명, 학급부회장 1명)과 학년자치대표(5~6학년별 학년회장 1명, 학년부회장(남자) 1명, 학년부회장(여자) 1명)로 구성한다. 학년자치대표의 경우 5~6학년 학생이 투표하여 선출한다.

**\*적용시기: 제2조의 경우에만 2026학년도 1학기 대표 선거부터 적용함. 2025학년도 2학기 대표 선거는 기존의 구성을 따름.**

**제3조(대표 임기 및 역할)** 임기는 해당 학기로 하며, 학생자치 전반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. 회의 출석부를 공개하고, 학기말에 공약 이행 결과 또는 학생자치 활동 결과를 발표하여 학생자치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.

**제4조(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역할)** 학급당 1명의 선거관리위원을 두어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학년자치대표 선거에서 준비·관리·운영·세부 사항 결정 등 제 전반의 역할을 수행한다. 학급자치대표 선거의 경우 자체 선거관리위원을 두어 학급 상황에 맞게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5조(금지)** 학용품, 먹을거리 등 일체의 유·무형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, 유·무형의 강요, 협박, 압력 등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6조(경고, 제지 및 당선무효)**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, 제지를 하거나 당선무효 처리할 수 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경고 및 제지, 당선무효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. 후보자가 받은 경고, 제지 및 당선무효 사항을 선거인들에게 공고할 수 있다.

**제7조(후보자 등록)**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(후보자 등록 신청서, 서약서, 공약서)를 기한 내에 제출한다.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후보자 등록이 제한된다.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과반 득표 시 당선된다.

**제8조(공약)** 후보자들은 공약이행 예산을 참고하여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공약서를 작성·제출한다.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학교 여건상 실현 불가능할 경우 재작성 요구 및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9조(선거 홍보물)** 선거 홍보물은 벽보 1부와 팸말 1부로 개수는 한정하되, 자유롭게 만들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. 크기와 공정한 선거에 방해되는 문구, 그림 등을 심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지할 수 있다.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며, 팸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. 그 외 선거운동 및 소견발표 등에 필요한 소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0조(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원)** 후보자는 선거운동원 3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정한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수가 많아 안전 및 공정한 선거 운동 관리가 어려울 경우 선거운동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1조(소견 발표회)** 시청각실, 강당, 방송 등을 활용하여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되, 후보자 수,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발표 시간, 질의응답과 같은 세부 진행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, 결정 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통지한다.

**제12조(투표)** 투표하기 전 투표자 명단에서 자신의 학년, 반, 이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표시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.

**제13조(무효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 이 외 불분명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1.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2.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
3.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.
4.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.
5. 지정된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.

**제14조(투·개표 방법 및 시간, 장소)** 투·개표 방법 및 시간, 장소 등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.

**제15조(개표 봉사자 위촉)**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봉사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6조(개표)**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함의 봉합,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.

**제17조(개표 참관)** 각 후보자 및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.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개표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8조(선거록 작성 및 보고)**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후 선거록을 작성하고, 개표 결과를 즉시 학교 누리집에 게시 및 발표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을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.

**제19조(이의 제기)**

- ①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그 단계에서 즉시 이의 제기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지한다.  
예) 등록하지 않은 선거 홍보물을 사용했을 시,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한다.
- ② 당선자 발표 후 24시간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 접수 후 사안 조사, 회의를 통해 이의를 처리한다.

**제20조(당선인 통지와 공고)** 이의 처리 절차 후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 및 당선증을 교부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한다.

**제21조(선거경비)**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자치 예산에서 지출한다.

**제22조(온라인 선거)** 재난재해에 준하는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.

**제23조(기타)**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.

## 부칙

본 개정안은 2025.7.1.자부터 시행한다. 제2조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선거부터 시행한다.